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만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607

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8월 11일
발 의 자 :임만균 의원(1명)
찬 성 자 :권수정, 권영희, 김경우, 김기대, 김기덕, 김상진, 김수규, 김재형, 김정태, 김정환, 김제리, 김창원, 김태수, 김평남, 김혜련, 박기열, 박기재, 박상구, 박순규, 성흠제, 송도호, 송명화, 송아량, 양민규, 유 용, 이경선, 이광호, 이성배, 이영실, 이정인, 이태성, 임종국, 장상기, 장인홍, 전석기, 최웅식, 한기영, 홍성룡, 황규복, 황인구 의원(40명)

1. 제안이유

○ 현행 조례는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지난 2013년 제정·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음.

반면 근거 법령인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은 시·도지사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·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 여러 차례 크고 작은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 왔음.

이에 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추가하고,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도를 높이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으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규정함(안 제3조제1호의2 신설).

나. 종전의 모호한 규정이나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함(안 제2조 등)

다.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(안 제5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“시”이”를 ““시””로, ““시장””을 ““시장”이”로, “서울특별시지적재조사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”로 한다.

제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지적재조사사업지구”를 “지적재조사지구”로 한다.

1의2.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

제5조제1항 중 “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”을 “위원”으로, “당연직 위원”을 “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위원 본인이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
2.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3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4.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

제6조제2항 전단 중 “있다고 판단되는”을 “있는”으로, “그 위원”을 “위원회에 그 위원”으로, “기피신청”을 “기피 신청”으로, “있으며,”를 “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또는 제2항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회피할 수 있다”를 “회피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직무”를 “업무”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회의)”를 “(위원회의 회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통지”를 “통보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.

제8조제4항 중 “작성·비치하여야”를 “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두되”를 “두며”로, “하고,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위원 중 1명을 실행 간사로 둘 수 있다”를 “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회의록”을 “회의록의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의견을 청취할”을 “그 의견을 들을”로 한다.

제11조 본문 중 “위촉위원”을 “위원”으로, “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”를 “범위에서 수당과 여비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직접”을 “직접적으

로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장에서 규정한 것 외”를 “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설치) 서울특별시(이하 "시"이라 한다)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라 한다) 소속으로 서울특별시지적재조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	제2조(설치) ----------"시"----------"시장"이----------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----------.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	제3조(기능)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의2.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
2.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	2. 지적재조사지구----------
3~4. (생 략)	3~4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임명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	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---------- 위원---------- 위원----------

기간으로 한다.	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,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위촉해지 할 수 있다.	③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 1. 위원 본인이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2.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.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
제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	제6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심의·의결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	② ----------

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	---------- 있는 ---------- 위원회에 그 위원---------- 기피 신청----------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	③ -----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----- 회피하여야 한다.
제7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	제7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---------- 업무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8조(회의) ① (생 략)	제8조(위원회의 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 ---------- 통보---------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,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	④ ----------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----------.
제9조(간사 등)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관(과장)으로 하고,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위원 중 1명을 실행 간사로 둘 수 있다.	제9조(간사 등) ① ---------- 두며---------- 한다.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 1. (생 략) 2.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·보존 3. (생 략)	② -----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 회의록의 ---------- 3.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의견청취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	제10조(의견청취 등) ① ---------- 그 의견을 들을 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수당 등)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,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11조(수당 등) ----------위원----------범위에서 수당과 여비----------. ----------직접적으로 ----------.
제12조(운영세칙)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	제12조(운영세칙) --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----------.